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4월 청렴의날 교육 병행 실시)

교육구분	특별 교육	교육일시	2016. 4. 4.(월) 16:00~17:00(1시간)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참석 사유
	교육대상 인원수	30	14	16	육아휴직 2명 휴가 1명
	교육실시 인원수	27	13	14	
교육내용	<p>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등 - 공직기강 위반행위 <p>II.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공직기강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철저 -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행위 금지 등 <p>III. 이달의 청렴교육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의 제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교육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	교육장소		비 고
	박태성	재무계약처장	재무계약처 사무실		

No	직위	성 명	서 명	No	직위	성 명	서 명
1	처장	박태성		17	부장	한상훈	
2	팀장	한영우		18	부장	장명완	
3	부장	강인숙		19	차장	송미영	
4	부장	박준경		20	차장	조경숙	
5	부장	이옥분		21	과장	구본현	
6	부장	이태형		22	과장	신효정	
7	과장	김순기		23	과장	박지숙	
8	대리	이혜원		24	대리	박용태	
9	대리	이기수		25	대리	공능애	
10	주임	정인영		26	대리	박영준	
11	대리	조영순		27	대리	이종혁	
12	선임	박재진		28	사원	하경태	
13	사원	양연경		29	대리	정진근	육아휴직
14	사원	진달래		30	대리	김종미	육아휴직
15	팀장	엄대형					
16	부장	윤홍배					



서울메트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통보

1. 감사실-1302호('16.03.25)와 관련입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을 실시 할 예정이니 각 소속장께서는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 및 개별공람 실시 등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4.1.(금)~4.12(화) 【12일간】

나. 대 상 : 본사 및 현업사업소(역 및 관리소 포함)

다. 내 용

○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 사건·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취약분야 및 취약개소 감찰 강화

○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간부급 비상연락망 점검

- 방법 : 종합관제소 『동보전송시스템』 활용한 불시점검

- 인사처 : 간부 직원(업무대행 포함)인사자료 변동시 종합관제소 통보

- 종합관제소 : 시스템 상시 사용 가능 유지

○ 각종 동향보고 철저

- 전 소속에서는 수사(감사)기관 조사, 방문점검 및 문서접수 즉시 감사실로 팩스(FAX ☎ 6110-5819) 또는 담당자(구내 ☎ 6110-5784)에게 유선 통보

붙임 :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1부.

2. 선거개입 유형과 사례 1부. 끝.

서울메트로사장



수신자 가1-19, 나1-3, 다1-3, 라1-16, 마1-13, 바1-8,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서울메트로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동조합위원장)

차장 **최기훈** 부장 **김인곤** 팀장(업무대행) **이택수** 감사실장 **전결 03/28**
장상덕

협조자

시행 감사실-1322(2016.03.28.)

접수 재무계약처-2159(2016.03.28.)

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5784

전송 02)6110-5819 / choigihoon@seoulmetro.co.kr

/ 비공개(5)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Metro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16. 3.

 | 감사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16. 4. 13.(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직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공직기강확립 및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시 조사담당관-3804호(2016.3.9.)『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특별감찰 통보』

1 추진 개요

- 기간 : '16.4.1(금) ~ '16.4.12(화) 【12일간】
- 대상 : 본사 및 현업사업소(역 및 관리소 포함)
- 점 검 자 : 감사실 청렴감찰팀장외 7명
- 방법 : 노출 및 비노출(야간점검 실시)

2 추진 사항

-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 특정 후보 선거 유세장 및 캠프 방문하여 선거 개입 행위
 -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지지 비방하는 행위
 - 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행정 자료 등을 특정 후보 선거 캠프에 유출하는 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 근무 중 음주, 취침, 무단이탈, 유기장 출입 여부
- 무단 이석, 사업장내 주류반입 여부
-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및 공직기강확립 자체교육 여부 등

사건·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선거 관련 규정위반 예방 활동
- 사정기관, 유관기관의 감찰활동 대비

간부급 비상연락망 점검

- 방법 : 종합관제소 「동보전송시스템」 활용한 불시 점검

취약분야 및 취약개소 감찰

- 해빙기 취약구간 안전관리 이행실태
- 시설물, 운용설비 등 고장의 장기간 방치(업무회피) 여부 등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전열기기 및 유류창고 관리실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취약개소 및 시설물 관리실태 등

3 **점검 방법**

점검반 운영

- 감사실 청렴감찰팀장외 7명(비노출 감찰)

4 **결과 조치**

점검 기간 중 비위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지휘 책임자 연대문책 예정

5 행정 사항

□ 각 소속장이 문서 접수 즉시 직접 교육 실시

□ 비상연락 전송시스템 상시 구축

○ 비상연락망 점검 시스템 상시 운영

- 인사처 : 간부 직원(업무대행 포함)인사자료 변동시 종합관제소 통보

- 종합관제소 : 시스템 상시 사용 가능 유지

※ 비상 상황 발생시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 각종 동향보고 철저히

○ 시 기 : 사건·사고 및 이례상황 발생 즉시

○ 내 용

- 업무 또는 개인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연행, 소환되어 조사 받는 경우

- 외부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자료 제출(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외부기관(권익위, 감사원, 서울시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 전 소속에서는 수사(감사)기관 조사, 방문점검 및 문서접수 즉시 감사실로 팩스(FAX ☎ 6110-5819) 또는 담당자(구내 ☎ 6110-5784)에게 유선 통보

- 언론기관에서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 등 동향(특히, 비판 보도 예상되는 경우)

-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사고 및 위법·위규 부당한 사항

- 지하철 운행장애, 시설물 안전사고, 공사장 사고, 건축물 붕괴 및 시민불편 사항 발생 등

붙 임 : 1. 비상연락망 점검시 단계별 응답 요령 1부.

2.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 1부(별도파일). 끝.

붙임 1

비상연락망 점검시 단계별 응답요령

[비상연락망 점검 단계별 송신 순서]

- ① 비상연락망 점검 예정 SMS문자 메시지 송신
- ② ESS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3회 송신
- ③ ESS에 등록된 집전화 번호로 2회 송신

[단계별 응답요령]

① SMS 문자 수신시

- ㉠ SMS 문자메시지 확인
- ㉡ 발신번호인 02-6110-1000으로 전화를 겁니다(통화 버튼)
- ㉢ 멘트 정취 후 『정상적으로 수신확인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면 응답처리 완료됨

② 휴대전화로 수신시

- ㉠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일정시간 경과하면 02-6110-1000에서 ESS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 ㉡ 전화를 받습니다.
- ㉢ 비상 전파내용을 듣습니다.
- ㉣ 수신확인 하시려면 1번을, 다시 들으시려면 2번을 누릅니다.
 - ※ 1번을 누름 → 『정상적으로 수신확인 완료 되었습니다』
⇒ 응답처리 완료(전화가 끊어집니다)
 - ※ 반드시 1번을 눌러야 응답처리 됨(기존 2번에서 1번으로 변경)

③ 집에서 전화 수신시

- ㉠ 02-6110-1000에서 ESS에 등록된 본인 집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 ㉡ 전화를 받습니다.
- ㉢ 비상 전파 관련내용을 듣습니다.
- ㉣ 수신확인 하시려면 1번을, 다시 들으시려면 2번을 누릅니다.
 - ※ 1번을 누름 → 『정상적으로 수신확인 완료되었습니다』
⇒ 응답처리 완료(전화가 끊어집니다)
 - ※ 반드시 1번을 눌러야 응답처리 됨(기존 2번에서 1번으로 변경)

④ 본인이 직접 응답 하는 경우(CALL BACK 기능)

- ① 위의 3가지 경우에 응답하지 못하여 직접 응답하는 경우
- ② 발신번호인 02-6110-1000으로 전화를 겁니다
 - 『서울메트로 지능형 비상연락 수신확인 서비스입니다』 멘트 송출
 -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멘트 송출
 - 『본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기계음)입력하신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 ※ 1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수신확인 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 응답처리 완료
- ※ 2번을 누르면 ⇒ 재 청취

장차적 공립은
공무원의 가치
결수 덕목입니다.

공무원의 가치결수 덕목 10가지

Contents

- 04 공무원의 선거공약의 의미
- 05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 06 공무원의 선거개입통원 개요
- 10 공무원의 선거개입 주의사항
- 12 세부 금지어사항

0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우리 헌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적 실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의 자유선거원칙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가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 따라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관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의미함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02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실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공무원은 총 294명으로 이 중 지방공무원은 277명, 교육공무원은 17명임

시·도별로는 경기도 59명, 경북도 41명, 전남도 38명 순이며 서울시(자치구포함)는 20명임(교과 2, 경고 18)

서울시의 경우 주요 위반사례는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전송, 한강무로투어 실시 및 홍보영상물 상영, 홍보물 분기별 중 1회 초과 발행 등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었음

다만, 일부자치구의 경우 08. 11월에 2회에 걸쳐(10일, 26일) 구청장 업적홍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25,287명에게 각각 발송하거나, 08. 11. 10. 구청장 홍보를 위해 발송문인과 발송대상자 명단 2,486명의 명단을 제공하는 등 고의적 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된 바 있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줄서기를 통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인선행정부에서 도 특별감찰단 및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을 운영하여 선거개입 및 금품·향응 제공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개입, 정치자금 기부(義助) 등 고의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03 공무원의 선거법 행위 개요

선거법 제4조 제1항 제1호(공직선거법 제4조 제1항)

① 직권대상

- 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 · 직원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 · 직원
- 다. 통 · 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 도 조직 및 구 · 시 · 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금지대상

- 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을 홍보 또는 폄하하는 행위

정칙 불명은 공무원의 필수 의무입니다.

나. 지위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마.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사.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교양강좌, 산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 · 배부 또는 발송하는 행위

※ 금지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분기별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



정칙 불명은 공무원의 필수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후원회 기요 및 후원금 기부행위(정치자금법 제45조)

① 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8조에 의하면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됨 (정치자금법 제23조, 제45조)

② 금지행위

- 가.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특정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 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자금 일부를 모금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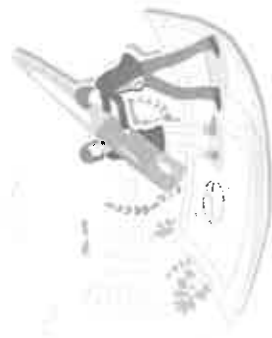
③ 후원금

- 공무원이 OMS이체방식을 통해 특정 정당 계좌로 매달 1만원씩 모두 2~34만원 씩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 전국 0000친목협의회 간부 3명은 2009년 000000명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

- 도교육청 A과장(4급 상당) 등 공무원 9명과 일반인 6명은 지난 2010년 6·2 교육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3월부터 00교육포럼을 운영한다며 4개월간 교육공무원, 학교납품업자 등 160명에게 8,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00지회장 유모 씨(56) 등 연합회 관계자 6명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





04 공무원의 선거개입 주요 사례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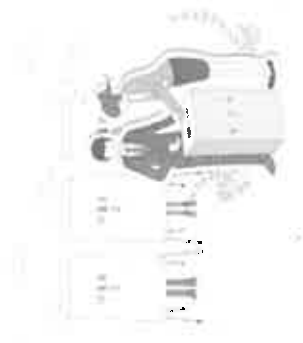
-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 유세장, 캠프 방문 또는 선거운동 참여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관여하거나 행정 내부정보 유출행위
- ...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 사적 모임 시 특정후보 지지 또는 비판, 知人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발송
-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 게시
- 자신이 투표한 기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발송
- 유권자를 모아 연설기회 제공, 친인척을 선거지원 봉사자로 지원행위
- 지지체장 격려 보도자료 제공, 업적 홍보 및 현수막 게시
- 특정단체 과다·편법 지원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

- 불필요한 단체장의 음성적 지지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 노인회, 세마을 협의회 등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발언
- 각종 사업자단체, 협회, 긴급 통강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유도
-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정책 수립, 미확정 정책자로 유출 등
- 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이 포함된 홍보물 설치 또는 발행
- 전광판에 단체장의 사진 등이 포함된 동영상 송출
- 향우회원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제공
-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개최·지원(선거 60일전)
- 편법 또는 봐주기식 민원처리로 특별 부여, 줄대기식 인사 진행 등





05 세부 금지사항

1. 소속 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제 기타 영접, 이바를 행하거나 교접 영접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영접할지의 영접 홍보 행위

(1) 소속 기관

업적홍보는 차기 선거에서의 다른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그 위법성이 특히 큰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시 이를 금지하고 있음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금지됨

‘업적’은 선거에서 공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업적을 홍보하는 동기나 방법은 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기관, 관공 및 국민대상

• 2002. 3. 28. 19:00경 00시 00음 소재 '오리농장' 식당에서 2002. 6. 13. 실시된 제헌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시점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천00시장, 00시장

선거구민인 2명을 비롯한 위 00동 부녀회장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00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하였다.

「항주지방법원재판지원 2002.12.3. 선고 2002고합33판결」

· 피고인은 00구청장인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26. 10:00 ~ 10:50경, 15:00 ~ 15:50경 2회에 걸쳐 00광역시 00구 월계동 846-1 소재 남부대학 민방위 교육장에서 00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민방위 대원 533명을 상대로 "수안, 하남, 신운자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 제가 토지개발 공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 택지개발을 유도하면서 00의 규정 목표를 성명해 주었다.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 구청장이 책임지고 분양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다. (중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9. 16:00 ~ 16:50경 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00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민방위 대원 1,944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교육, 관광, 노인복지, 교통, 공군비행장 이전, 택지 개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항주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노375 판결」

· 000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권을 구청관내 통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공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업적 홍보에 해당됨
 『1997.4.25. 대법원 판결 97도330』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매니페스토평가단과 공동으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신법 제86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이
 없이 공약추진과 관련있는 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거나 반복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의 업적을 홍보· 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신법 제86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7. 2. 중선위, 』

• 설날을 맞아 ○○시청 공무원이 공기임인 △△를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은 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 20만부를
 제작하여 선거구 안에 발송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임 『대법원 2006.12.21. 2006도7046』

•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별로 개최되는 영농교육장 전체를 빼지않고 일차별로
 참석하여 영농시책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
 로서 무방할 것이나, 긴급한 현안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영농교육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시를 하는 것은 제86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1.20. 중선위』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무원 10명 고발(2010.07.05.)**

중앙선관위는 5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204명의
 명단을 감시원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중 10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의뢰(6명), 경고(22명), 이첩(5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사의 한 면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A시장 지사전 100권 중 66권을 기관 및 단체장에게 배포했으며 B시의 한
 동장은 유권자를 상대로 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역 선거 정황을 파악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도의 한 교육연구사는 사조직을 만들어 현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흐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행에 관여하는 행위

○ 주요 내용

본 규정은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함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넷자료 작성, 토론 관련 질문수집, 명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

기획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사전적 의미인바, '기획에 참여' 또는 '기획의 실시에 관여'는 남의 일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이 자산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회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음

공무원 등의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말함. 즉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

② 주요 내용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행위에 공동 가담하거나 공무원이 자기 자산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행위에 공동 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공무원이 방송사의 임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도지시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제8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 [대법원 2007.11.15. 2007도300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군 소속 공무원들과 연고가 있는 전리남도 거주민들 또는 경선선거인(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선출권과 동시에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도 갖고 있다)의 명단 및 그 연락처를 파악·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한 다음 ○○도지사 선거 경선출마자인 민○○측에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내경선 뿐만 아니라 위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민○○의 선거운동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공선법 제86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항제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명주지방청원해남지원 2004. 11. 24. 판결 2004고합59』

• 모 시청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이 현지 시정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던 중 2005. 11월경 "200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 송년 영·유아 독서선지 행사기획안"을 작성하여 비서실 직원을 통하여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에 전달하였으나 담당과장이 선거법위반을 우려하고 시기에 촉박하여 기획문건과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됨으로써 당초의 기획문건 내용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대법원 판결 2003. 11. 10. 2003도6653, 광주고등법원 판결 2009. 6. 24. 2009노220』

• ◇◇동사무소 행정주사인 ○○○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출마한 공소의 김○○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동사무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공소외 오○○ 등 8명에게 진화하여 서울시 공무원이나 그 가족 중 시험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적사항을 통보받고, 이를 김○○후보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선거운동을 함

『서울지법, 1996. 10. 23. 99고합351』

• ○○○도청 공보관과 그 직원이 선거기간 중에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질문내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후보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측에 제공하여 답변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론회의 질문지로 선정된

시민단체의 간부에게 진화를 하여 질문내용을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임 『대전고법 2002. 11. 15. 2002노566』

• 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에 참여한 것임 『대법원 2005.128, 2004도6003』

•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 『대법원 2004.3.25. 2003도2832』

• ○○○시 지지위원과의 선거사무담당공무원이 임후보 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제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임후보예정자 김○○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임 『서울고법 2003.5.2. 2003노206』

• ○○○군 행정계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군수를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들과 연고가 있는 △△남도 거주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 『광주고법 2005.127. 2004노674』

•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의 책임당원 임당원사를 받아주도록 부탁을 받고 공무원이 수행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2006.9.22. 김천지법』



- 시청간부들이 시청홍보 스크랩들을 각 동 5급이상 간부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임 『2003.7.13. 성남지원 판결』
- 공무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발췌하여 동사무소에 보내고, 공표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선거정황을 수집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임 『2003.7.24. 경주지원』



6.2 지방선거 임박·공무원 출서기 기승(2010. 3. 24 보도)

6.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출서기가 위협수위를 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적발된 건수가 벌써 43건에 이르고 있다.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공무원들이 선거철에 출서기 유희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지리보장' 여부가 판기를 나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간부들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많은지, 자신의 공직생활 마지막을 쟁겨줄 후보가 누구인지 축구를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보직 부여, 출연기관장 임명같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출서기는 논공행상식 선상성 인사, 아니면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임적인 존재로 지목받고 있다.

노골적인 단체장 홍보·지난 22일 경남 진주시 신 모(55·5급) 과장과 이 모(53·5급) 동장 등 2명이 현 시정에 대한 선거운동 협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동장은 지난 1월 18일 관변단체 월례회에 참석, "우리 시장 다시 출마한다. 시장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다. 우리 동에서 물포가 나와야 힘이 실린다"며 진주시장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과장은 지난해 8월께 "나에도 많은 사람이 두번 찍으면 돼지 3선은 욕심"이라는 등 진주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속지 후 파기란 글귀가 적힌 '지역민심 적극 대응소치'란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만든 뒤 "행사 때 적극 홍보하라"며 읍·면·동장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열린 읍·면·동장 워크숍에서 "통 반장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외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노하유를 집결해 6.2 지방선거를 승리 축하잔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사례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간접 홍보도 극성·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지 단체장의 인기도나 지지도를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남 함안군에선 지난달 10일 모 면장이 이장 37명에게 '지역발흥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람'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선거관위에 적발됐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현지 단체장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에 모 지역 시민회관 소공연장 1층 로비 벽면에 길거리회에 참여한 현직 시장의 대항사진을 실친 공무원이 선거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전남 도 지지단체의 3동강은 지난 2월 관내 여론동향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면서 시장 후보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 '조사(調査)'의 개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그 사전(辭典)적인 의미대로 '어떤 사실이나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나 찾아보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행위도 포함됨. 반면에 지지도를 실제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임의대로 표기한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본조에서 금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④ 제11 조 제 1항 제 2호

• 공보실 직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 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사 게재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2008.6.30. 안산지원」

• 피고인 000, 000, 000으로부터 피고인 000에게 순차 내려진 '비전1동 10개 관변단체 회원 200여 명의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000은 위와 같은 조사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아, 위 회원의 명단 옆에 자신이 알고있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임의대로 세모(△ 도름당), 오(○ 글수민중당(원이다), 엑스(X 글수민중당원 아니다)의 표기를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는 관변단체회원 개인의 정당지지도를 실제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000 임의대로 표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03.9.2. 선고 2000도2331판결」



-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정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어 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9.11. 회답.

2. 선거기간

- 0.0도 0.0군 행정과정은 정당 지체경선에 참여하는 현 군수의 여론지지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군청 직원들에게 진 진화에 “패스콜”을 신청토록 독려 (패스콜: 진 진학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번호(출대번호 등)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4. 선거기간 중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안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준을 규정하는 행위

5. 주요 내용

-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며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기간 중임
- 준공식,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공식, 즉시 공사를 시작할 사업의 기공식은 금지되지 아니함

- 다만, 위의 행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본 조가 아닌 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됨

6.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설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국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즉시 공사를 진행할 사업이라면 그 기공식을 선거기간 중이라도 거행하는 것은 무방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11.12. 회답.

7. 선거기간 중 각종 업무의 출장을 하는 행위

8. 주요 내용

-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로 어떤 곳에 가거나 임시로 파견되는 것’, ‘회사나 직장의 업무를 위하여 근무하는 곳을 벗어나 외부의 장소에 나가는 것’, ‘직무를 띠고 어느 곳으로 나가는 것’, ‘공적인 일을 보러 외부에 나가거나 임시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하여 ‘용무(用務)’와 관련한 타처 방문 혹은 파견이라고 정의되며, 여기서 ‘용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 및 예시 문장, 복합어 (출장비, 출장소경) 등에 비추어 방문처 혹은 파견처 등 특정 목적지와 관련한 소정의 직무상 용무를 의미함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 이니머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으로 볼 수 없음

① 판례 연구

- 피고인 ○○○는 공무원은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갑천시 ○○○읍장으로 근무하던 때인 같은 달 29.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의 집으로 가서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인 피고인 ○○○, ○○○에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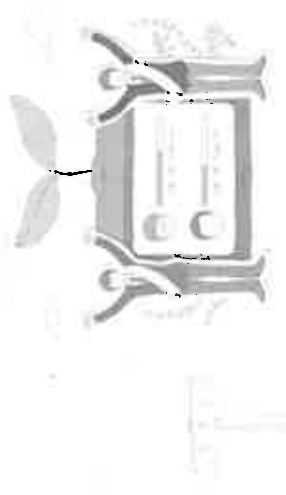
1대구고등법원 20131130. 선고. 2002노·101판결

4.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한 기면이나 시일을 인정하는 범위

① 주요 내용

- 본 규정은 공무원 등이 선거기간 중에 휴가를 얻어 업무와 관련 있는 기면, 시일을 방문하여 선거인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공정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선거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기간 중이며 그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방분행위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 조 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Metro”



서울메트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인사과-8793호('16.3.25.)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나. 서울시 인사과-9117호('16.3.29.)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2.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16.3.24.자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침”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16.3.30. ~ 4.6.)” 동안의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소속에서는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당면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마무리 철저
- (2)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철저
- (3) 상황관리 대비 철저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 (4)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5) 주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 (6)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금지 등. 끝.

서울메트로사장



수신자 1-6, 가1-19, 나1-3, 다1-3, 라1-16, 마1-13, 바1-8

과장	정영숙	부장	하상돈	팀장	조수용	처장	전결 04/01 조동수
----	-----	----	-----	----	-----	----	-----------------

협조자

시행 인사처-2315(2016.04.01.)

접수 재무계약처-2308(2016.04.01.)

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02-6110-5292 전송 5294

/ ysjeong@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